

학사학위 운영센터 운영 규정

제정 2020. 10. 5.
개정 2022. 2. 21.

제 1 장 총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「학칙」 제4조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계속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심화된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학사학위 수여를 위하여 설치하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학사학위 운영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이 대학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관련 학사행정 전반에 적용하되, 다른 상위 규정에 위반 되지 않는 한 이 규정에 따라 학사업무를 처리한다.

제3조 (직무)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신규인가 신청, 모집, 증원, 전환, 운영현황 변경 신청, 운영평가 등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모집의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.

제4조 (기능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학사학위 대학운영위원회 운영 업무
2.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신규인가 신청에 대한 업무
3.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신규모집 및 홍보 업무
4.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증원, 전환 및 운영현황 변경 신청에 대한 업무
5. 학사학위 대학운영위원회 위촉 업무
6.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업무
7.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평가를 통한 환류 및 개선 업무
8. 기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지원과 관련된 업무

제5조 (조직)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, 센터를 대표하여 제반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센터장은 이 대학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③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를 담당할 직원과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제6조 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은 우리 대학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20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.
2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2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